



# 음주운전 및 태아보험

글 **채명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선임연구원

## 1. 머리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정의를 두고 있다. 약관 상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과거 약관에서는 음주측정 불응행위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4월 1일 개정된 표준약관부터는 음주측정 불응행위도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써 음주측정 불응자와 음주측정에 응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부담 없이 보상하고 있으나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에서 음주운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인수하기 않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만약 수사기관의 위법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위법사항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법규위반 사항에서도 음주운전이 제외된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면책(보험금 부지급)사항에서 부책(보험금 지급)사항으로 바뀌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를 통해 실제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형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최근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선천성질환 및 기형 등 난치성 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모들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일명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태아보험은 많은 선천성 질환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태아보험 약관에서 ‘선천성 뇌질환’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약관)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천성 뇌질환’을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지만 동 보험약관 규정에서 ‘선천성 뇌질환’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다면, 그 선천성 뇌질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우리가 잘 모르는 난치성 질환 중에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동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두뇌질환이 아니고, 척수질환

도 아닌 기타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질병은 약관상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 약관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2. 분쟁조정 사례

### 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 (1) 사실관계

동 분쟁은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다. 먼저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민원인은 검찰로부터 피보험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음주운전이 제외되었는데도, 보험회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

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참조)이라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먼저, 당해 약관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인천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09.12.11.) IV.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피의자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보험자의 운전은 당해약관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찰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음주운전이 제외되었다고 하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법상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당해약관 해석에 참조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사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음주 수치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과 눈이 붉었으며 말을 할 때 혀가 구부러지면서 발음이 불명확하였고 걸을 때나 움직일 때 휘청거렸으며, 전화로 만취상태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한 경우 비록 구체적인 음주수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계약 자기차량손해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대법원 2005.6.10. 2005다 22053 판결) 있다는 판례를 아울러 인용하였다.

(3) 시사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민원인 측이 형법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약관 적용 시에는 약관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비록 형법상 음주운전에 제외된 사유가 채혈과정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증거 불충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판단에 불과하고 약관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조정 사례에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 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동 분쟁사례는 민원인이 임신 중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동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생후 20개월 시점에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sup>1)</sup> 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동 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먼저 민원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질병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신경계 질환' 이며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도 '신경계 질환'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 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측은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에 의하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의 경우 소뇌의 일부가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병의 원인이 선천성 뇌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러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먼저 약관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 28208 등)이므로, 이건 관련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선천성 뇌질환' 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사전 등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표(통계청 고시)에서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을 Q00~Q99로 분류하고 있고, Q00~Q07의 경우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Q00~Q04은 뇌와 관련된 선천 기형, Q05~Q06의 경우에는 척추 및 척수와 관련된 선천 기형, Q07은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으로 별

1) 회귀 질환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의 형성부전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뇌형성 부전은 출생 후 금방 감지되기 시작하나 어떤 환자는 정상으로 보이다 성장하며 뇌의 형성 부전이 나타난다. 이 질환의 특징은 소뇌의 일부분이 두뇌의 기저부를 통해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뇌와 척수가 만나는 곳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척수액이 뇌로 가는 흐름이 방해되며 결국 척수액이 척수와 뇌의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된다. 척추강으로 돌출된 소뇌의 부분은 길어지며 이 모양이 편도(tonsils)와 닮았다고 해서 '소뇌 편도(Cerebellar tonsils)' 라고 불린다.(질병관리본부)

도 분류하고 있어 Q07을 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이 동 건 관련 보험약관을 2009.4. 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질병분류표의 '뇌의 선천기형'을 Q00~Q04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9. 제정된 질병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에서도 '선천성 뇌질환'을 Q00~Q04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Q07.0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고, 2009.4. 동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라면,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동 특약의 위험률 산정 시 위험률 증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있어야 하나,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 개정에 따른 별도 위험률 조정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험요율 산정 측면에서도 면책범위가 조정되었다고 볼만한 증빙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질병의 원인이 후뇌(hind-brain)의 이상과 관련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뇌와 척수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질환 부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약관상으로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한데, 약관 해석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타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Q00(뇌없음증 및 유사기형)에서부터 Q04(뇌의 기타 선천 기형)까지 범위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3) 시사점

동 건과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보험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면책약관에 있어서 약관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현행 보험약관에는 여러 가지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조항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약관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 3. 맺음말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9,555건이며, 이들 처리건 중 소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소비자 구제율은 총 44.6%이다. 이는 약 10건 중 4.5건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소비자가 구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법원 등 타 기관의 소비자 승소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 구제 권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므로 구제율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금융회사와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먼저 금융감독원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

※ 본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45-5215, mkchae@fss.or.kr)